

서울중앙지방법원  
공 판 조 서

제 3 회

사 건 2006고단 24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 명예훼손)

판 사 조 귀 장

기 일 : 2006. 9. 21. 14:00

장 소 : 제522호 법정

법원 주사보 임 석 출

공개 여부 : 공 개

고지된  
다음 기일 : 2006. 10. 19. 17:00

피고인 김 명 호

출석

검 사 차 순 길

출석

판 사

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

피고인

별지와 같이 206. 8. 22.자 공판조서 이의신청서 진술

판 사

피고인의 변론 녹취신청에 대하여 향후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녹취를 할 것을 고지하고,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의의 내용 및 취지를 밝힐 것을 명.

피고인

'형사소송규칙 132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방식은 검사가 먼저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라 그 다음에 피고인이 하게 되어 있으며,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2는 검사가 할 때는 반드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하면서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법원 실무제요 제5장 공판절차에 의하면 증거를 제출할 것에 대하여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검사가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

판 사

(검사에게)개별 증거방법에 대한 입증취지를 밝힐 것을 명.

검 사

(증거서류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)목록에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지와 그 입증취지를

위 등본입니다

2006. 10. 9

법원주사 임석출



기재하여 제출한다고 답변

(이때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거서류 등 목록을 주고, 증거서류를 제시)

판 사

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은 즉,

피고인

이런 증거목록이 아니라 증거서류 자체에다 첨부하여 입증취지를, 이 증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설명해 달라, 검사 측에서 허위 사실과 범의에 대한 입증취지에 걸맞는 증거를 제출했을 때에 한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

판 사

피고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므로, 우선 피고인의 인부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한다고 고지

피고인

검사 측에서 각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쓴 것을 제시하면 1주일 내에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

증거관계 별지와 같음(검사)

판 사

변론 속행

2006. 9. 21.

법원 주사보

임 석

출



판 사

조 귀

장



2006. 9. 21.

## 공판조서 이의 신청서

사건 2006 고단 2459 명예훼손(서울지법 단독 8부, 조귀장 판사)

피고 김명호 서울서동지교 서울지법 100호  
(휴대

위 명예훼손 사건 관련, 8월 17일자 공판조서에 대하여

### 형사소송법 제 54 조(공판조서의 정리 등)

② 차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이의 및 변경 신청합니다.

첫째: 8월 17일자 공판에서는 전회(7월 4일자)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한 바 없습니다.

둘째: 8월 17일자 공판조서와 실제 공판 심리와의 차이

### <실제 공판 심리내용>

판사: "증거목록(증거 서류등) '인, 부' 표 작성했나요?"

피고: "판사님 말대로 열람신청하러 재판부에 가보니 증거목록만 있고 증거들이 없어서 '인, 부' 결정을 할 수 없기에, 7월 12일 준비서면에서 설명하였듯이, 검사측에 증거 제출명령 내려달라고 했는데..."

검사측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,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설명, 그리고 제가 범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그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, 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월 보고 '인, 부'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?"

검사:(인부표를 보여주면서) "'인, 부' 표를 작성해야 자료가 재판부에 가는 것이고, 그 자료는 공안 사무국에 있습니다."

피고:"내가 왜 공안 사무국에 가야 하나요? 상식적으로 재판부에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?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됩니까?"

판사:"여기는 형사소송법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."

피고:(상식에 어긋나는 검사와 판사의 말에...) "녹음해도 되겠습니까?"

판사:"변론 중에 녹음할 수 없습니다."

피고:"그럼 다음에 신청하겠습니다."

판사:"소송절차에 관하여..., 변호사 선임할 생각 없습니까?"

피고:(딱 잘라) "없습니다."

판사:"증거를 받아보기 위한 절차로서, 먼저 '인, 부'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니 열람하고 작성하세요. (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) 혐의는 증거를 받아본 다음에 따지는 겁니다."

피고:(상식에 어긋나는 판사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, 검사도 옆에서 판사를 거들고...) "그렇다면 제가 (형사소송법 등을)알아보고 하겠습니다."

판사:"양승태 증인신청은 현재 진행되는 것도 없어, 피해자를 증인신청하는 것은 부결하겠습니다."

피고:"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건데..."

판사:"그건 문서송부 촉탁 같은 겁니다."

피고:"그럼 나중에 다시 (양승태 증인) 신청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,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해야 하니 보류해 주십시오."

판사:"그래도 일단 결정을 해야 하니까..."

피고:"보류하지 않고 부결한다면 그 이유가 됩니까?"

판사:"그럼 보류하겠습니다."

피고:"그리고 조관행 판사사건을 보니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있던데..."

판사:"그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관계없습니다."

판사:"이 사건과 관련 사건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?"

검사:"3 건이 있는데, 한건은 이광범... 재정신청기각되었고,....또 한건은 ...."

피고:"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맞고소와 박홍우 판사 고소건인데, 나머지 한건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것입니다."

검사:(뭔가 주절주절 사건 설명)"

피고:"지난 30 년간의 재임용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불법행위관련 공개질의를 공재협 이름으로 했더니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고소한 것입니다."

검사:"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..."

피고:"제가 대표로 가서 했기 때문이죠."

검사:"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... 재정신청은 어떻게 되었나요?"

피고:"기각되어 재항고 했더니, 재판부의 주심이 피고인과 동문이라 법관기피 신청했습니다."

판사:"양승태는 경남고인데..."

피고:"피고인 이광범, 이상훈과 주심 김황식이 같은 광주일고 동문입니다."

판사:"...그거 끝날려면 오래 걸리겠네요."

피고:"그 사건들과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? 왜 사건 끝나는 걸 기다립니까? 법관의 독립이 됩니까?"

판사:"독립해서 판단하라는 거죠. 그럼 검사측 자료 제출 기한은?"

검사:"좀 걸릴 것 같습니다."

판사:"9월 21일이면 되겠습니까? 오후 2시."

검사:"예"

판사:"9월 21일 까지 '인, 부'표 내도록 하십시오."

피고:"이 재판부는 고전에 나오는 (네 죄를 네가 알렸다?의)변학도식 재판부가 아닙니다. 필요없는 증거를 낼 이유는 없고, 저는 피고인으로서 검사측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부입니다. 와서는 안될 이 재판을 되도록 이면 빨리 끝내주기 바랍니다."

판사:"..."

#### 결론:

공판조서 등본과 실제 공판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, 속기가 아닌 공판 녹취 내지는 녹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6년 8월 22일

위 피고인 김명호



<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hyungsa.htm>

서울 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